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17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한기호 · 임종득 · 김태호

정성국 · 유용원 · 성일종

김승수 · 서지영 · 윤영석

윤한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의 대상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참전유공자 사망 후 고령의 배우자가 생계 불안 등 어려움에 처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 실시의 구체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물 설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물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한편 그 유족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의4 신설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를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우자”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4(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람”을 각각 “사람 또는 그 배우자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③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이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그 달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참전유공자가 65세 전에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생존하였을 경우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8조의6제1항제2호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를 “배우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참전유공자”를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u>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u> 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u>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배우자”란 <u>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u>
제3조(적용 대상자) <u>참전유공자</u> 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u><신 설></u>	제3조(적용 대상자) <u>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u> ----- ----- -----. <u>제4조의4(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u>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

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②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③ -----

-----참전

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생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생략)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

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1.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3. (현행과 같음)

④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

1. -----

-----사람 또는 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생략)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신 설>

배우자

2.

-----사람 또는 그 배우
자-----

3. (현행과 같음)

②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
예수당은-----

③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참전유공자가 사

③ <u>참전유공자</u>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7조(의료지원) ① <u>참전유공자</u>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	<u>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이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그 달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u> 2. <u>참전유공자가 65세 전에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가 생존하였을 경우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배우자가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u> ④ <u>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u> ----- -----.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7조(의료지원) ① <u>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u>----- -----
---	--

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 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생략)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

-----.

② -----참전 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

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②·③ (생략)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
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
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배
우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

-----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
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u>참전유공자</u>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u>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u>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u>----- -----<u>제3항</u>----- ----- ----- ----- ----- -----. ⑤ ----- ----- -----<u>제1항 또는 제2항</u>----- ----- ----- ----- ----- -----.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 ----- ----- -----
---	---

